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

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7조).
-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(안 제12조).
-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(안 제19조).
-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·운영하며,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,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(안 제27조).
-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(안 제42조).
- 정보의 제공·열람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함(안 제49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35조¹⁾는 공법상 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제38조²⁾에 따른 조사협조 및 “신고 의무”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, “신고 의무”에 대한 규정은 안 제34조³⁾에만 규정되어 있고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 또한 해당 규정상 신고 의무자이므로 해당 법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반면 안 제40조⁴⁾는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

-
- 1) **안 제35조(공법상 의무의 승계)** 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8조에 따른 조사협조 및 신고 의무를 승계한다.
 - 2) **안 제38조(조사 및 보고 등)**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, 원료물질 사업자, 피해자 및 유족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1.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, 물건 및 의견의 제출
 2.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, 물건,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3) **안 제34조(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.
 1.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을 합병이나 분할합병한 경우,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
 2.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,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법인(분할되는 법인으로서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) 및 분할신설법인(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)
 3.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, 그 영업을 양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연대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.
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④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이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4) **안 제40조(정보청구권)** ①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, 사용설비,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, 독성, 생산·판매, 인허가(신고, 등록, 변경신고,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)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.
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, 사용설비,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, 독성, 생산·판매, 인허가(신고, 등록,

업자에 대한 정보 청구 및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정보 청구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자 역시 정보청구에 대한 협조 의무를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이에,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35조(공법상 의무의 승계) 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8조에 따른 조사 협조 <u>및 신고 의무</u> 를 승계한다.	제35조(공법상 의무의 승계) 제34조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제38조에 따른 조사 협조 <u>및 제40조에 따른 정보청구 협조 의무</u> 를 승계한다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

변경신고,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)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.

⑥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